

고덕강일 대성베르힐 입주자모집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5.23.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2-427-8000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05.23. 이전부터 계속 거주)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5년	적용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 공공택지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5.23.(금)	2025.06.02.(월)	2025.06.04.(수)	2025.06.05.(목)	2025.06.12.(목)	2025.06.15.(일) ~ 2025.06.18.(수)	2025.06.23.(월) ~ 2025.06.26.(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덕강일 대성베르힐” 견본주택 내 분양상담 전화(02-427-8000) 및 홈페이지(https://gd-verthill.co.kr)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4.2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 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낮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우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시모, 조부모·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우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 까지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gd-verthill.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가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중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이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 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5.23.(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인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2025.05.23.**) 현재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4.05.23.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50%를 우선공급하며, 수도권(서울특별시 1년 미만, 경기도, 인천광역시) 내 거주한 자에게 50%를 공급(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단,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6.02.(월)	2025.06.04.(수)	2025.06.05.(목)	2025.06.12.(목)	2025.06.15.(일) ~ 2025.06.18.(수)	2025.06.23.(월) ~ 2025.06.26.(목)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 77-22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대규모택지개발지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한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제3호)	10년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 하기로 합니다.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계약자 부담분)를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 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환불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 1/2(각각 50%씩 납부)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균등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지역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유무기간

-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의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5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3년의 거주유무기간을 적용하고 있는바, 본 아파트는 분양가격의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으로 5년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유무자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따른 거주유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함. 이하 이 조 및 101조에서 같음)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따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주유무자가 거주유무기간을 거주하여야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있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의3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유무자 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유무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거주유무자들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건축재개발과 - 6882호(2025. 05. 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43번지 일원(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2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0층~15층 13개동 총 613세대
 [특별공급 302세대(기관추천 42세대, 다자녀가구 61세대, 신혼부부 99세대, 노부모부양 18세대, 생애최초 8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194	01	084.8857A	84A	84.8857	26.5004	111.3861	63.8063	175.1924	55.6842	173	17	17	40	5	33	112	61	13
	02	084.9595B	84B	84.9595	26.0156	110.9751	63.8616	174.8367	55.7326	126	12	13	29	4	24	82	44	9
	03	084.9353C	84C	84.9353	25.9711	110.9064	63.8436	174.7500	55.7167	130	13	13	30	4	25	85	45	9
	04	101.6696	101	101.6696	25.9120	127.5816	76.4222	204.0038	66.6942	184	-	18	-	5	-	23	161	16
	합 계									613	42	61	99	18	82	302	311	47

- ※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자재 품질 및 품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모집공고상의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 제곱미터(㎡)까지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 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이에 따라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기계실, 전기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비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추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의거 대지면적 변경 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1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 청약신청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전용면적 기준)’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주택형	084.8857A	084.9595B	084.9353C	101.6696
건본주택 등 약식표기	84A	84B	84C	101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약식표기)		84A	84B	84C	101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4	2	3	-	9
		장기복무 제대군인	4	2	2	-	8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3	2	-	8
	중소기업 근로자		3	2	3	-	8
	장애인	서울특별시	1	1	1	-	3
		경기도	1	1	1	-	3
		인천광역시	1	1	1	-	3
	소계		17	12	13	-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50%)		9	7	7	9	32
	서울특별시 1년 미만·경기도·인천광역시 거주자 (50%)		8	6	6	9	29
신혼부부 특별공급		40	29	30	-	9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	4	4	5	18	
생애최초 특별공급		33	24	25	-	82	
합 계		112	82	85	23	30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약식 표기	동/호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합계	계약 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 시	
										2025.09.05.	2026.01.05.	2026.06.05.	2026.10.05.	2027.01.05.	2027.05.05.		
084.8857A	84A	101동 1, 2호	1~2층	16	525,720,977	402,879,023	-	928,600,000	92,860,000	92,860,000	92,860,000	92,860,000	92,860,000	92,860,000	92,860,000	278,580,000	
		103동 1호	3층	13	525,720,977	414,679,023	-	940,400,000	94,040,000	94,040,000	94,040,000	94,040,000	94,040,000	94,040,000	94,040,000	282,120,000	
		104동 1호		13	525,720,977	426,479,023	-	952,200,000	95,220,000	95,220,000	95,220,000	95,220,000	95,220,000	95,220,000	285,660,000		
		105동 1호	4층	13	525,720,977	426,479,023	-	964,000,000	96,400,000	96,400,000	96,400,000	96,400,000	96,400,000	96,400,000	96,400,000	289,200,000	
		106동 1호															
		107동 1호															
		108동 1호	5~7층	39	525,720,977	438,279,023	-	974,000,000	97,400,000	97,400,000	97,400,000	97,400,000	97,400,000	97,400,000	292,200,000		
		109동 1호	8~11층	52	525,720,977	448,279,023	-	984,000,000	98,400,000	98,400,000	98,400,000	98,400,000	98,400,000	98,400,000	98,400,000	98,400,000	295,200,000
		111동 1, 3호															
112동 3호																	
113동 3호	12층 이상	40	525,720,977	458,279,023	-												

084.9595B	84B	103동 2호	1~2층	17	526,178,042	393,421,958	-	919,600,000	91,960,000	91,960,000	91,960,000	91,960,000	91,960,000	91,960,000	91,960,000	275,880,000
		104동 2호	3층	9	526,178,042	405,221,958	-	931,400,000	93,140,000	93,140,000	93,140,000	93,140,000	93,140,000	93,140,000	93,140,000	279,420,000
		105동 2호	4층	9	526,178,042	417,021,958	-	943,200,000	94,320,000	94,320,000	94,320,000	94,320,000	94,320,000	94,320,000	94,320,000	282,960,000
		106동 2호	5~7층	27	526,178,042	428,821,958	-	955,000,000	95,500,000	95,500,000	95,500,000	95,500,000	95,500,000	95,500,000	95,500,000	286,500,000
		107동 2호	8~11층	36	526,178,042	438,821,958	-	965,000,000	96,500,000	96,500,000	96,500,000	96,500,000	96,500,000	96,500,000	96,500,000	289,500,000
		108동 2호	12층 이상	28	526,178,042	448,821,958	-	975,000,000	97,500,000	97,500,000	97,500,000	97,500,000	97,500,000	97,500,000	97,500,000	292,500,000
		109동 2호														
084.9353C	84C	112동 4호	1~2층	13	526,028,165	400,571,835	-	926,600,000	92,660,000	92,660,000	92,660,000	92,660,000	92,660,000	92,660,000	92,660,000	277,980,000
		113동 4호	3층	9	526,028,165	412,371,835	-	938,400,000	93,840,000	93,840,000	93,840,000	93,840,000	93,840,000	93,840,000	93,840,000	281,520,000
		101동 3, 4호	4층	9	526,028,165	424,171,835	-	950,200,000	95,020,000	95,020,000	95,020,000	95,020,000	95,020,000	95,020,000	95,020,000	285,060,000
		102동 1, 2호	5~7층	27	526,028,165	435,971,835	-	962,000,000	96,200,000	96,200,000	96,200,000	96,200,000	96,200,000	96,200,000	96,200,000	288,600,000
		111동 2호	8~11층	36	526,028,165	445,971,835	-	972,000,000	97,200,000	97,200,000	97,200,000	97,200,000	97,200,000	97,200,000	97,200,000	291,600,000
		112동 1, 2호	12층 이상	36	526,028,165	455,971,835	-	982,000,000	98,200,000	98,200,000	98,200,000	98,200,000	98,200,000	98,200,000	98,200,000	294,600,000
101.6696	101	113동 1, 2호	1~2층	30	629,668,384	394,392,378	39,439,238	1,063,500,000	106,350,000	106,350,000	106,350,000	106,350,000	106,350,000	106,350,000	106,350,000	319,050,000
		103동 3, 4호	3층	16	629,668,384	405,119,651	40,511,965	1,075,300,000	107,530,000	107,530,000	107,530,000	107,530,000	107,530,000	107,530,000	107,530,000	322,590,000
		104동 3, 4호	4층	16	629,668,384	415,846,924	41,584,692	1,087,100,000	108,710,000	108,710,000	108,710,000	108,710,000	108,710,000	108,710,000	108,710,000	326,130,000
		105동 3, 4호	5~7층	48	629,668,384	426,574,196	42,657,420	1,098,900,000	109,890,000	109,890,000	109,890,000	109,890,000	109,890,000	109,890,000	109,890,000	329,670,000
		106동 3, 4호	8~11층	54	629,668,384	435,665,105	43,566,511	1,108,900,000	110,890,000	110,890,000	110,890,000	110,890,000	110,890,000	110,890,000	110,890,000	332,670,000
		107동 3, 4호	12층 이상	20	629,668,384	445,756,015	44,575,601	1,120,000,000	112,000,000	112,000,000	112,000,000	112,000,000	112,000,000	112,000,000	112,000,000	336,000,000
		108동 3, 4호														

※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본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상기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수분양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 및 부동산 거래로 발생하는 각종 기타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본 아파트 계약체결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전용 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형은 건축비 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등 추가선택 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은 수분양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며, 단지 내 공동주택과 별도의 대지경계선으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공급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하기로 하며,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조건(중도금이자 후불제)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분양대금의 총 10%) 완납 및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과 별도로 대출 약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수분양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 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수분양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분양자는 상기 분양대금 납부일정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관리비선수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와 무관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84A, 101 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와 주택형은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카달로그 등)에 표기된 평형별 평면 등의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원본 서류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사본 불가)
- 전산검색결과 당첨 사실, 이중 당첨 및 주택 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본 표시 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반(공급위치), 단지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적용된 단지 명칭,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대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p>-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p> <p>-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p> <p>-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p>-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무주택 요건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80 1146 2040 1365">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자원과 ■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50%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5조에 의거 주택형별 대상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우선공급 낙첨자,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함.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②배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배점항목</th> <th rowspan="2">총배점</th> <th colspan="2">배점기준</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기준</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00</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p>※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p>(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p> <p>(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p> <p>※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p>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9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50%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50%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당첨자
선정방법

비고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5.23.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교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정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8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p> <p>-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p> <p>■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p>					
당첨자 선정방법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p> <p>■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50%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0%</p> <p>■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차적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p> <p>-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p>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9% 범위 : 8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임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임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50%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5.23.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2순위 청약신청 가능하며,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추첨제로만 신청이 가능 함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80 517 2033 671">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50%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②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border="1" data-bbox="280 980 2067 1094"> <thead> <tr> <th>구분</th> <th>가점제</th> <th>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d>70%</td> <td>30%</td> </tr> <tr> <td>전용면적 85㎡ 초과</td> <td>80%</td> <td>20%</td> </tr> </tbody> </table> <p>-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p> <table border="1" data-bbox="280 1152 2085 1439">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9">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9">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15년 이상</td> <td>32</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16</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70%	30%	전용면적 85㎡ 초과	80%	2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70%	30%																																																							
전용면적 85㎡ 초과	80%	2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p>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p>												
<p>③입주자지속 가입기간</p>	<p>입주자지속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p>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p>■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비율</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추첨제 물량의 75%</td> <td>무주택세대구성원</td> </tr> <tr> <td>2단계</td> <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 </tr> <tr> <td>3단계</td> <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 </tr> </tbody> </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지속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p>비고</p>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p>												

■ 청약신청 일정 및 당첨자 발표 안내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 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5.06.02.(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사업주체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 77-22번지)
일반공급	1순위	2025.06.04.(수)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2순위	2025.06.05.(목)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 은행을 방문(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셔야 함)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인증서 등을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유효한 인증서 등을 이미 소유하신 고객은 추가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청약접수일 전에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고객께서는 미리 갱신 발급하시기 바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격 착오기재 등(수정 불가)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5.06.12.(목)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또는 카카오톡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치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치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6.12.(목) ~ 2025.06.21.(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치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5.06.12.(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자격확인서류 제출 대상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당첨자 전원	2025.06.15.(일) ~ 2025.06.18.(수) 10: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덕강일 대성베르힐 건본주택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 77-22번지 (☎ 02-427-8000)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예비입주자	※ 예비입주자 서류 접수 대상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자격검증 서류제출기간에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서류 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는 예비순번 순 등으로 서류접수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일정, 공급(추첨) 방법 등을 당사 홈페이지(<https://gd-verthill.co.kr>)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 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 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서류 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미접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간 내 필히 서류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서류제출 및 동·호수 배정, 계약 등) 일정은 홈페이지(<https://gd-verthill.co.kr>) 게시 또는 별도 통보할 계획입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여부 및 부적격소명 등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물량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동·호수를 추첨의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공통서류와 특별공급 유형별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당첨자 자격요건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본주택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당첨자 자격요건 서약서로 대체)

	○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불가)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본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기준: 본인발급(대리인 발급 불가) / 발급용도: 서류제출 및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 전자 인감증명서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단,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해당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건본주택 비치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일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의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확인으로 같음)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정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한부모가족증명서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 중인 경우(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자녀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3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이상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소득산정대상의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건본주택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포함
	○		소득증빙서류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 중인 경우(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건본주택 비치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제출 필요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		공시가격 증명서류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토지, 주택 등에 대한 공시가격 인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이하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서 •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확인서 • 오피스텔, 상가 : [건물분] 홈텍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토지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토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청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청자 또는 당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전체포함” 발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주민번호 전체,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주민번호 전체,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주민번호 전체,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소득산정대상의 소득 및 자격요건 작성(건본주택 비치)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포함
	○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주자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 중인 경우(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건본주택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 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전체포함” 발급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제출 필요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	공시가격 증명서류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토지, 주택 등에 대한 공시가격 인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이하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서 •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확인서 • 오피스텔, 상가 : [건물분]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토지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토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제3자 대리인 신청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발급기준: 본인발급(대리인 발급 불가) / 발급용도: 서류제출 및 계약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 전자 인감증명서 불가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불가)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전세피해자 제출서류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경매 : 매각허가결정, 공매 : 매각결정통지서 등) •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건분주택 방문 청약 시 상기 해당 접수 유형별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주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신혼부부 / 생애최초)

해당자격		소득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매월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세무서
	신규사업자(공고일 이전) 등	①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공고일 이전 가입)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재직증명서	①, ②, ④ 해당직장 ③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②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금년도 신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단,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전인 경우 전전년도소득금액증명원)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건분주택 비치 ② 세무서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 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예비입주자) 소득세 납부 입증 구비서류

해당자격	서류구분	확인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직인날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직장,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및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②, ③ 세무서 ④ 해당직장 	

- ※ 상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당년도 모두)해야 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세 납부 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자산입증 구비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서류 구분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자산기준 입증서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발급)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위택스(www.wetax.go.kr),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주택과 토지의 경우, 일사관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 가능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 외 건물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 인쇄·제출 -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인쇄·제출 	행정복지센터 / 일사관리(kras.go.kr) 서울시(www.etax.go.kr), 서울시 외(www.wetax.go.kr)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초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 신청 및 열람하기 조회결과 인쇄·제출 ※ [조회 명의인] “신청하신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로는 부동산소유현황 조회내역이 없습니다.” 내용 화면 인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구)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정부24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1.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3.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합니다.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5.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당첨자 자격요건 서약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무주택 입증서류(당첨자 자격요건 서약서로 대체)
	○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불가)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본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기준: 본인발급(대리인 발급 불가) / 발급용도: 서류제출 및 계약용 ※ 전자 인감증명서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해당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 불가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 세대원 및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가정제 (예비 입주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직계존속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정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출) 청약출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정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이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주민번호 전체,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	위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발급기준: 본인발급(대리인 발급 불가) / 발급용도: 서류제출 및 계약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 전자 인감증명서 불가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불가)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전세피해자 제출서류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경매 : 매각허가결정, 공매 : 매각결정통지서 등)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대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상기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p>주택처분 기준일</p>	<p>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p>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p>	<p>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종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p> <table border="1" data-bbox="253 1094 1995 1276"> <thead> <tr> <th>조항</th> <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 <th>주거전용면적</th> <th>수도권</th> <th>비수도권</th> </tr> </thead> <tbody> <tr> <td>제53조제9호가목</td> <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 <td>60㎡ 이하</td> <td>1억 6천만원</td> <td>1억원</td> </tr> <tr> <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 <td>단독주택</td> <td rowspan="3">85㎡ 이하</td> <td rowspan="3">5억원</td> <td rowspan="3">3억원</td> </tr> <tr> <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 </tr> <tr> <td>도시형 생활주택</td> </tr> </tbody> </table> <p>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임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p>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9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및 계약금을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체결 기간	계약 체결 장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계약 체결	2025.06.23.(월) ~ 2025.06.26.(목) 4일간 10:00 ~ 16:00	고덕강일 대성베르힐 건본주택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 77-22번지)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 당첨자 계약 체결 일정 및 방법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기준: 본인발급(대리인 발급 불가) / 발급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 전자 인감증명서 불가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신분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전자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아파트 공급계약: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간 1/2씩 인지세 부담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합계액이 일치해야 함 ※ 6억원 이상 주택형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계약 시 의무 작성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통지 서류

대리인 계약 시 추가사항 (본인 외 모두)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발급기준: 본인발급(대리인 발급 불가) / 발급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 전자 인감증명서 불가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책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모바일 신분증 불가)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수입인지 구매금액 - 공급대금, 발코니확장(추가 선택품목 대금 포함)대금을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균등 부담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구매절차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or 비회원 구매 > 구매 > 납부정보 입력(인지세납부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 금액선택 / 1건) > 테스트 출력 > 결제(계좌이체 or 신용카드) > 출력

※ 주의사항 :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 출력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인지세 납부 이후 출력된 전자수입인지 원본의 변경(소인 등) 시, 인지세를 재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당첨자 계약 체결 기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 시 필요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발생 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주택소유현황, 청약제한 사항 등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등으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하였으나 확인 필요사항 누락, 생략 등 자격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통보 및 소명 안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또는 청약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음)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확인결과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는 유선 또는 대면, 서면의 방법으로 입주대상자에게 부적격 통보하며, 그 통보일로부터 7일의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계약체결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거 부적격당첨자의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청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p>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p> <p>※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2의2. 제28조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당첨된 경우 3.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5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p>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p> <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p>	<p>-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특별공급 및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2.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3.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4.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53조) 참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 (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②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p>-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 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p> <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점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점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 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 계약체결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법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택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으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원,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기타 제반비용(중도금 이자 등)은 환불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체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 하기로 합니다.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계약자 부담분)를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 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환불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 1/2(각각 50%씩 납부)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점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남은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공급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국민은행	344901-04-133032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지사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과오입금 등은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 체결 시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팔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2동 101호 계약자 → ‘1020101홍길동’)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60% 범위(중도금1회부터 중도금6회까지) 내에서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 알선을 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납부는 대출 개시일부터 입주지정기간 개시 직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잔금납부시 사업주체에게 전액 지급)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 시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하며, 이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 이자 및 기타 제반 비용 등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분양 계약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대출로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까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최초 신청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금리 등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중도금 대출금리 조건(대출금리 인상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을 및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10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의 납부 방법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분할 납부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타입)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5.09.05.	입주지정일
84A	9,910,000	991,000	991,000	7,928,000
84B	9,630,000	963,000	963,000	7,704,000
84C	8,300,000	830,000	830,000	6,640,000
101	12,890,000	1,289,000	1,289,000	10,312,000

2.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건본주택에 설치하였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선택시 외부 창호는 미설치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분양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써,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면적 및 공급금액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반드시 건본주택에 비치된 건축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 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일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 및 외부 입면 변화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에 발코니 초과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타입이 있으며, 이 면적은 확장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건본주택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면적에 초과 발코니 면적 중 비확장 부분과 공유되는 부분의 면적이 일부 포함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부분 확장 선택은 불가하며,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품질(타사제품 포함)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시 확장부분 외부 사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창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위치, 스프링클러 헤드,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커튼박스 크기, 세대간 마감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단열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벽체의 돌출 및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돌출, 우물천정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확장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덕트 및 연도, 배관, 각종 설비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에도 비확장되는 안방 발코니,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는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실내외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 스스로 환기 등의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단열재 설치 요구 및 결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또한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대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 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당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는 추가선택품목 선택형(유상, 무상)이 불가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가 확장을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경우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시공 후 하자 발생 및 민원에 대한 사항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 실등 외부 창호, 출입문 등은 계약 미포함사항이며 향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설비 배관 시공 등으로 인하여 창호 및 등기구의 크기, 위치,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사용 및 우천으로 인해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라 발코니 설치비용을 완화 받은 개방형 발코니는 확장이 불가하며 이에 따라 서비스면적 및 공간 구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배수관 동파, 범죄 예방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돌출 개방형 발코니 부분에 배수 및 급수 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우수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됩니다.
- 돌출 개방형 발코니 위치는 인·허가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타입 및 세대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사전에 인지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돌출 개방형 발코니는 외부 사시 설치가 불가하므로 사전에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 유상선택 품목)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옵션선택	에어컨 설치 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5.09.05.	입주지정일
84A, 84B, 84C	선택 1	거실, 침실1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선택 2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6,300,000	630,000	630,000	5,040,000
101	선택 1	거실, 주방, 침실1	5,200,000	520,000	520,000	4,160,000
	선택 2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7,500,000	750,000	750,000	6,00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별 실 위치에 설치됩니다.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하며, 설치 위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부세대 비확장시 천장단열재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기구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타입별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귀속되며, 원상회복 또는 변경 공사를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매립배관,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세대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이 설치됩니다.(벽걸이 및 스탠드형 냉매매립배관,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적용되는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우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입주자가 추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 등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 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당사의 실외기실에 포켓형으로 2단 적체가 불가능합니다.

2. 가구 옵션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품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5.09.05.	입주지정일
현관	현관 신발장		84A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84B	800,000	80,000	80,000	640,000
			84C	900,000	90,000	90,000	720,000
			101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현관 중문		84A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84B, 84C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101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현관 팬트리		84B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84C, 101	900,000	90,000	90,000	720,000
주방 특화	아일랜드 식탁	(ㄷ자형)주방 아일랜드 식탁	84A, 84C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101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一자형)주방 아일랜드 식탁	101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냉장고장		전 타입	900,000	90,000	90,000	720,000
	팬트리	주방 팬트리	84A, 101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84B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84C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주방 팬트리+ 다목적실 팬트리(ㄱ자형 주방)		101	5,500,000	550,000	550,000	4,400,000
주방고급 특화	(ㄷ자형)주방 세라믹타일, 고급형 상부장 사각싱크볼, 터치수전 (아일랜드 식탁 선택 시 선택 가능)		84A	10,400,000	1,040,000	1,040,000	8,320,000
			84C	10,500,000	1,050,000	1,050,000	8,400,000
			101	15,000,000	1,500,000	1,500,000	12,000,000
	(ㄴ자형)주방 세라믹타일, 고급형 상부장 사각싱크볼, 터치수전		84B	8,600,000	860,000	860,000	6,880,000
			(ㄱ자형)주방 세라믹타일, 고급형 상부장 사각싱크볼, 터치수전 (아일랜드 식탁 선택 시 선택 가능)		101	13,500,000	1,350,000
드레스룸	일반 드레스룸		84A, 84C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84B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101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고급 드레스룸		84A, 84C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84B	6,600,000	660,000	660,000	5,280,000
			101	6,200,000	620,000	620,000	4,960,000
침실	침실3 반침장(불박이장)		전 타입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3. 가전 옵션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품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5.09.05.	입주지정일
주방 빌트인 가전	주방 쿡탑	비스포크 4구 인덕션 (업그레이드)	전 타입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비스포크 김치1, 냉장1, 냉동1 (빌트인용냉장고장 포함)		전 타입	6,300,000	630,000	630,000	5,040,000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전 타입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복합오븐, 하부장		전 타입	700,000	70,000	70,000	560,000
욕실 가전	욕실 복합환풍기	공용욕실	전 타입	900,000	90,000	90,000	720,000
		부부욕실	전 타입	900,000	90,000	90,000	720,000
드레스룸 가전	천정형제습기		전 타입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4. 욕실 옵션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품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5.09.05.	입주지정일
욕실 특화	수전, 도기 (양변기 제외)	공용욕실	전 타입	5,000,000	500,000	500,000	4,000,000
		부부욕실	전 타입	5,500,000	550,000	550,000	4,400,000
	비데일체형 양변기	공용욕실	전 타입	800,000	80,000	80,000	640,000
		부부욕실	전 타입	800,000	80,000	80,000	640,000

5. 조명 옵션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품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5.09.05.	입주지정일
거실 주방 조명특화	거실+주방	84A, 84B, 84C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101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거실+주방+거실확장(거실+침실2)	84A, 84C		3,900,000	390,000	390,000	3,120,000
		101		4,100,000	410,000	410,000	3,280,000

6. 거실 아트월 및 바닥타일 옵션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품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5.09.05.	입주지정일
거실 아트월	세라믹 업그레이드	84A, 84C		5,100,000	510,000	510,000	4,080,000
		84B		5,400,000	540,000	540,000	4,320,000
		101		5,600,000	560,000	560,000	4,480,000
고급 수입 바닥타일	ㄱ(=)자형 주방	84A		10,600,000	1,060,000	1,060,000	8,480,000
		84B		10,100,000	1,010,000	1,010,000	8,080,000
		84C		10,900,000	1,090,000	1,090,000	8,720,000
		101		12,100,000	1,210,000	1,210,000	9,680,000
	ㄱ(=)자형 주방+거실확장	84A		13,100,000	1,310,000	1,310,000	10,480,000
		84C		13,200,000	1,320,000	1,320,000	10,560,000
		101		14,600,000	1,460,000	1,460,000	11,680,000
	(=자형)주방 (=자형)주방+거실확장	101		13,200,000	1,320,000	1,320,000	10,560,000
		15,400,000		1,540,000	1,540,000	12,320,000	

7.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일정은 공동주택(아파트) 공급계약 일정 또는 일정 기간 정하여 체결할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공동주택(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 의사가 있는 계약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과 별도임)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입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선택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변경 및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귀속되며, 원상회복 또는 변경 공사를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경우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도면, 홍보물 등의 가구 및 가구 표현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 및 계약 시 선택한 사항이 우선하므로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본주택은 2025년 8월 중 폐쇄 및 철거하므로 추후 견본주택에서 관람 및 옵션 계약 진행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인 84B, 84C 타입은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마감 및 가구 구성, 가구 길이, 가구의 입면 및 도어 개폐방향, 가구/마감재 색상의 조합, 거실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크기 등이 상이하며, 분양자료(VR, 이형모형, 분양 카달로그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가전제품 사용 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커튼, 침대, 소파, 책상, 식탁, 전시 조명, 거실장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류, 세탁기류, TV),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VR동영상은 견본주택 촬영 및 3D 구현한 영상으로 마감재 이외에 추가 선택품목과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제공품목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현장의 외부 마감은 입면 CG와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가구 후면 및 바닥 마감이 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 지정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국민은행	344901-04-133058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지사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2동 201호 계약자 → '1020201홍길동'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2.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분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품목
I	문	문틀, 문짝, 문선, 상부덧판, 도어록 및 경첩 등 일체	세대 현관 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발코니 내부 PL창호
II	바닥	바닥재, 걸레받이 등 (마루판,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재료분리대 등)	바닥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III	벽	벽지, 장식벽(타일, 비닐쉬트 및 패널 등), 발코니, 대피공간 벽체도장, 신발장, 화장대(상판 등 거울일체), 드레스룸(도어, 시스템 선반 일체), 반침장, 재료분리대, 팬트리, 붙박이장, 수납선반 및 가구 등	콘크리트면처리 또는 석고보드 마감
IV	천장	천정지(초배지포함), 반자동림(올딩), 우물천정, 발코니 천정 도장	콘크리트면처리 또는 천정을 위 석고보드 마감
V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수전류, 약세서리일체, 천정재(천정을포함), 재료분리대, 젠다이, 샤워부스, 욕실장, 배기팬, 바닥 및 벽 타일, 욕실폰	액체방수,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VI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약세서리 포함),주방 가전 일체(가스쿡탑, 렌지후드, 주방TV폰, 절수기싱크수전 등), 벽타일	소방관련 시설,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VII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 등기구 포함)	전기배관/배선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품목 등은 건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함.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84A	84B	84C	101
기본선택(마이너스 옵션 금액)	35,353,948	35,223,497	35,201,691	42,919,421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분양(공급)금액에서 상기 해당 타입별 공제한 금액을 분양(공급)금액으로 합니다.

4.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 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및 추가유상선택품목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의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 및 추가 유상 선택품목 옵션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 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절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 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가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에 따른 계약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대출 알선이 불가하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인접세대 주민과의 불화 및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관여하지 않으며 계약자 본인이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법」 제48조의2 제1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주택법」 제48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 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 방문기간 시작일 전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7년 10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입주 가능일을 통보할 예정이며, 본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 입주지정기간을 60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관리 부채 또는 부주의로 인한 피해와 리스크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피트니스센터[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 코인세탁실(공간만 제공) 등], 커뮤니티센터(어린이케어센터, 작은도서관, 독서실, 스터디룸 등), 어린이놀이터(3개소), 주민운동시설(2개소),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9의2호)

지하 주차장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구획의 높이
지하 1층	2.8m	2.8m	2.3m
지하 2층	2.3m	2.3m	2.3m

■ 내진설계

-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으며, 건축법 제 48조의 3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VII등급, 최대지반가속도 0.204g임

■ 공동주택 성능등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 style="font-size: small;">■ 주택성능등급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30.></p>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1. 공동주택명: 관동구 고대강일지구 12블록 공동주택 2. 신 청 자: 디에스종합건설㈜ 3.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37번지 일일 4. 성 능 등 급</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font-size: x-small;"> <tr> <th>가. 소용 관련 등급</th> <th>가. 소용 관련 등급</th> <th>가. 소용 관련 등급</th> </tr> <tr> <td>1. 생활용수 사용량</td> <td>상당등급</td> <td>생활용수 사용량</td> </tr> <tr> <td>2. 생활용수 사용량</td> <td>상당등급</td> <td>생활용수 사용량</td> </tr> <tr> <td>3. 생활용수 사용량</td> <td>상당등급</td> <td>생활용수 사용량</td> </tr> <tr> <td>4. 생활용수 사용량</td> <td>상당등급</td> <td>생활용수 사용량</td> </tr> <tr> <td>5. 생활용수 사용량</td> <td>상당등급</td> <td>생활용수 사용량</td> </tr> </table> <p>나. 구조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font-size: x-small;"> <tr> <td>1. 내진성능</td> <td>상당등급</td> </tr> <tr> <td>2. 가연성능</td> <td>상당등급</td> </tr> <tr> <td>3. 소음감소율</td> <td>상당등급</td> </tr> <tr> <td>4. 수직소음률</td> <td>상당등급</td> </tr> </table> <p>다. 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font-size: x-small;"> <tr> <td>1. 기온 적외선 방화력</td> <td>상당등급</td> </tr> <tr> <td>2. 고도용 직하용기량</td> <td>상당등급</td> </tr> <tr> <td>3. 공기질 관리</td> <td>상당등급</td> </tr> <tr> <td>4. 생활용수 사용량</td> <td>상당등급</td> </tr> <tr> <td>5. 생활용수 사용량</td> <td>상당등급</td> </tr> <tr> <td>6. 생활용수 사용량</td> <td>상당등급</td> </tr> <tr> <td>7. 생활용수 사용량</td> <td>상당등급</td> </tr> <tr> <td>8. 생활용수 사용량</td> <td>상당등급</td> </tr> <tr> <td>9. 생활용수 사용량</td> <td>상당등급</td> </tr> <tr> <td>10. 생활용수 사용량</td> <td>상당등급</td> </tr> <tr> <td>11. 생활용수 사용량</td> <td>상당등급</td> </tr> <tr> <td>12. 생활용수 사용량</td> <td>상당등급</td> </tr> <tr> <td>13. 생활용수 사용량</td> <td>상당등급</td> </tr> <tr> <td>14. 생활용수 사용량</td> <td>상당등급</td> </tr> <tr> <td>15. 생활용수 사용량</td> <td>상당등급</td> </tr> <tr> <td>16. 생활용수 사용량</td> <td>상당등급</td> </tr> <tr> <td>17. 생활용수 사용량</td> <td>상당등급</td> </tr> <tr> <td>18. 생활용수 사용량</td> <td>상당등급</td> </tr> </table> <p style="font-size: x-small;">*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04월 01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p>	가. 소용 관련 등급	가. 소용 관련 등급	가. 소용 관련 등급	1.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생활용수 사용량	2.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생활용수 사용량	3.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생활용수 사용량	4.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생활용수 사용량	5.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생활용수 사용량	1. 내진성능	상당등급	2. 가연성능	상당등급	3. 소음감소율	상당등급	4. 수직소음률	상당등급	1. 기온 적외선 방화력	상당등급	2. 고도용 직하용기량	상당등급	3. 공기질 관리	상당등급	4.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5.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6.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7.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8.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9.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10.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11.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12.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13.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14.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15.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16.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17.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18.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p style="text-align: center;">녹색건축 예비인증서</p> <p style="text-align: center;">녹색건축 예비 인증서</p> <p style="font-size: small;">[인증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font-size: x-small;"> <tr> <th>인증 기준</th> <th>인증 기준</th> <th>인증 기준</th> </tr> <tr> <td>1.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td> <td>인증기준</td> <td>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td> </tr> <tr> <td>2.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td> <td>인증기준</td> <td>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td> </tr> <tr> <td>3.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td> <td>인증기준</td> <td>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td> </tr> <tr> <td>4.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td> <td>인증기준</td> <td>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td> </tr> <tr> <td>5.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td> <td>인증기준</td> <td>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td> </tr> </table> <p style="font-size: x-small;">* 위 인증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주택)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분야별 평가]</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font-size: x-small;"> <tr> <th>분야</th> <th>평가점수</th> </tr> <tr> <td>에너지 절약 목표율</td> <td>36%</td> </tr> <tr> <td>에너지 절감 목표율</td> <td>84%</td> </tr> <tr> <td>에너지 절감 목표율</td> <td>38%</td> </tr> <tr> <td>에너지 절감 목표율</td> <td>38%</td> </tr> <tr> <td>에너지 절감 목표율</td> <td>38%</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4월 1일</p> <p style="text-align: center;">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인증 기준	인증 기준	인증 기준	1.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	인증기준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	2.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	인증기준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	3.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	인증기준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	4.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	인증기준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	5.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	인증기준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	분야	평가점수	에너지 절약 목표율	36%	에너지 절감 목표율	84%	에너지 절감 목표율	38%	에너지 절감 목표율	38%	에너지 절감 목표율	38%	<p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p style="font-size: small;">■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증명(별지 제 2호 서식) <개정 2023.12.29>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font-size: x-small;"> <tr> <th>인증 기준</th> <th>인증 기준</th> </tr> <tr> <td>1.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td> <td>인증기준</td> </tr> <tr> <td>2.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td> <td>인증기준</td> </tr> <tr> <td>3.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td> <td>인증기준</td> </tr> <tr> <td>4.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td> <td>인증기준</td> </tr> <tr> <td>5.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td> <td>인증기준</td> </tr> </table> <p style="font-size: x-small;">* 위 인증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증명(별지 제 2호 서식) <개정 2023.12.29>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03월 11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p>	인증 기준	인증 기준	1.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	인증기준	2.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	인증기준	3.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	인증기준	4.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	인증기준	5.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	인증기준	<p style="text-align: center;">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p> <p style="text-align: center;">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p> <p style="font-size: small;">이 건물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인증합니다.</p> <p style="font-size: x-small;">* 이 인증서는 2023년 06월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관련건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려야 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font-size: x-small;"> <tr> <th>신 청 인</th> <td>이 장</td> <td>디에스종합건설(주)</td> </tr> <tr> <th>주 소</th> <td>주소</td> <td>경주광역시 북구 청원로1108번길 4. (신동동)</td> </tr> <tr> <th>건 축 물</th> <td>이 장</td> <td>서울 고덕강일지구 12BL 내성베르빌 공동주택</td> </tr> <tr> <th>주 소</th> <td>주소</td> <td>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 38</td> </tr> <tr> <th>인 증 내 용</th> <td>구 분</td> <td><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업무시설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 <input type="checkbox"/> 다세대주택 <input type="checkbox"/> 기숙사 <input type="checkbox"/> 도시형생활주택</td> </tr> <tr> <th>인 증 등 급</th> <td>초고속정보통신건물</td> <td><input checked="" type="checkbox"/> 4등급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2등급</td> </tr> <tr> <th>주 제 트 리 크 리 터 리 움</th> <td>초고속정보통신건물</td> <td><input checked="" type="checkbox"/> AAA (30T) <input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03월 24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전파관리소장</p>	신 청 인	이 장	디에스종합건설(주)	주 소	주소	경주광역시 북구 청원로1108번길 4. (신동동)	건 축 물	이 장	서울 고덕강일지구 12BL 내성베르빌 공동주택	주 소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 38	인 증 내 용	구 분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업무시설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 <input type="checkbox"/> 다세대주택 <input type="checkbox"/> 기숙사 <input type="checkbox"/> 도시형생활주택	인 증 등 급	초고속정보통신건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4등급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2등급	주 제 트 리 크 리 터 리 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AAA (30T) <input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
가. 소용 관련 등급	가. 소용 관련 등급	가. 소용 관련 등급																																																																																																																														
1.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생활용수 사용량																																																																																																																														
2.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생활용수 사용량																																																																																																																														
3.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생활용수 사용량																																																																																																																														
4.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생활용수 사용량																																																																																																																														
5.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생활용수 사용량																																																																																																																														
1. 내진성능	상당등급																																																																																																																															
2. 가연성능	상당등급																																																																																																																															
3. 소음감소율	상당등급																																																																																																																															
4. 수직소음률	상당등급																																																																																																																															
1. 기온 적외선 방화력	상당등급																																																																																																																															
2. 고도용 직하용기량	상당등급																																																																																																																															
3. 공기질 관리	상당등급																																																																																																																															
4.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5.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6.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7.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8.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9.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10.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11.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12.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13.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14.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15.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16.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17.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18. 생활용수 사용량	상당등급																																																																																																																															
인증 기준	인증 기준	인증 기준																																																																																																																														
1.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	인증기준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																																																																																																																														
2.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	인증기준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																																																																																																																														
3.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	인증기준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																																																																																																																														
4.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	인증기준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																																																																																																																														
5.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	인증기준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																																																																																																																														
분야	평가점수																																																																																																																															
에너지 절약 목표율	36%																																																																																																																															
에너지 절감 목표율	84%																																																																																																																															
에너지 절감 목표율	38%																																																																																																																															
에너지 절감 목표율	38%																																																																																																																															
에너지 절감 목표율	38%																																																																																																																															
인증 기준	인증 기준																																																																																																																															
1.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	인증기준																																																																																																																															
2.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	인증기준																																																																																																																															
3.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	인증기준																																																																																																																															
4.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	인증기준																																																																																																																															
5. 단열재의 보열차단 성능	인증기준																																																																																																																															
신 청 인	이 장	디에스종합건설(주)																																																																																																																														
주 소	주소	경주광역시 북구 청원로1108번길 4. (신동동)																																																																																																																														
건 축 물	이 장	서울 고덕강일지구 12BL 내성베르빌 공동주택																																																																																																																														
주 소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 38																																																																																																																														
인 증 내 용	구 분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업무시설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 <input type="checkbox"/> 다세대주택 <input type="checkbox"/> 기숙사 <input type="checkbox"/> 도시형생활주택																																																																																																																														
인 증 등 급	초고속정보통신건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4등급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2등급																																																																																																																														
주 제 트 리 크 리 터 리 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AAA (30T) <input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등)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의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해당없음 - 지역난방 적용
기밀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 세대 내에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 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구분		금액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271,821,965,062	공사비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38,728,943,767	기계설비	위생기구설비공사	1,556,241,930			
	기간이자	22,987,638,334			용접공사	-		난방설비공사	1,413,092,483			
	필요적 경비	15,400,234,298			조적공사	215,374,056		가스설비공사	2,258,848,926			
	그 밖의 비용	31,280,968,858			미장공사	2,508,374,571		자동제어설비공사	814,233,884			
	계	341,490,806,552			단열공사	981,023,714		특수설비공사	819,488,258			
공사비	토목	토공사			1,738,788,739	방수, 방습공사		1,095,277,174	공조설비공사	공조설비공사	858,885,621	
		흙막이공사			601,483,944	목공사		1,160,941,494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9,166,739,088
		비탈면보호공사			-	가구공사		4,877,540,783			정보통신공사	5,581,462,295
		옹벽공사			300,738,901	금속공사		1,142,554,256			소방설비공사	5,909,783,896
		석축공사			-	지붕 및 환통공사		57,783,373			승강기공사	-
		우수, 오수공사			853,631,248	창호공사	4,089,568,943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7,879,742,984	
		공동구공사			300,738,901	유리공사	1,646,857,463		이윤	5,253,141,923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233,760,065	타일공사	2,658,089,221	계	131,328,640,220			
		도로포장공사			819,488,258	간접비	돌공사	1,646,857,463	설계비	1,993,545,486		
		교통안전시설물공사			131,323,726		도장공사	1,830,720,016	감리비	2,392,254,584		
		정화조시설공사			-		도배공사	1,357,934,454	일반분양시설 경비	10,375,181,096		
		조경공사			3,874,189,973		수장공사	701,291,253	분담금 및 부담금	4,566,278,663		
		부대시설공사			1,645,542,948		주방용구공사	3,301,597,101	보상비	-		
		건축			공통가설공사		1,603,520,240	그 밖의 건축공사	2,053,975,019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56,441,987,510	
					가시설물공사		320,440,654	급수설비공사	1,707,267,408	계	75,769,247,338	
지정 및 기초공사	2,907,611,180		급탕설비공사	1,394,706,474	그 밖의 비용		65,698,974,572					
철골공사	-		오수,배수설비공사	1,329,042,154	합계		614,287,668,682					

2)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따라 공시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VAT포함)

항 목		결정금액	산 출 근 거	
택지비가산비	말뚝박기공사비	13,526,660,371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17,754,308,486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22,987,638,334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인정	
	제세공과금	14,351,174,289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인정	
	택지와 관련된 필요적 경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49,060,009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인정
	소 계(택지비 가산항목)		69,668,841,490	-
건축비가산비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2,392,569,902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사업승인조건에 따른 가산비용	법정초과 조정시설	3,221,994,907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비용	1,637,216,38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층간차음재 설치비용	7,034,745,15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외관특화 공사비용	6,814,223,714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인텔리전트 설비에 따른 가산비용	홀네트워크 설비공사	8,161,445,639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초고속통신특등급 설비공사	2,519,986,786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에어컨냉매배관 설비공사	4,126,465,60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기계환기설비공사	7,450,411,487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분양보증수수료		1,481,706,875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따른 가산비용	친환경주택 평가방식에 따른 가산비용	2,619,980,851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인정
		태양광 설비	578,086,598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지하층 충고상향 공사비용		1,870,572,792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법령 및 조례 제정 개정 등에 따른 비용	건강친화형주택추가비용(친환경도료)	10,882,129,75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비용	607,601,621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신재생에너지(집광채광루버)	4,299,836,519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소 계(건축비 가산항목)		65,698,974,572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건축	전기	소방	통신
회사명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청림이앤씨	(주)유일방재엔지니어링	신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
감리금액	2,689,515,400	490,254,971	736,971,879	158,40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고덕강일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5612025-101-0001500 호	₩ 430,001,180,000 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종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p>【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p> <p>【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p>【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p>【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p>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종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종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자(수분양자)는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설한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분양대금채권 및 임대수입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디에스종합건설(주)	디에스종합건설(주)	대성베르힐건설(주)
법인등록번호	200111-0351802	200111-0351802	200111-0144968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108번길 4, 5층(신용동)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108번길 4, 5층(신용동)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233-12, 상가동 201호(사직스카이)

12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사업은 서울특별시 재건축재개발과-243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법 = 형별 면적(㎡) × 0.3025 또는 형별 면적(㎡) ÷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라 공부 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 또는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공급금액의 상이함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택건설지역 인근 기반 시설(도로, 녹지, 공원, 학교, 상/하수, 전기/난방, 저류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공사(또는 SH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및 시세 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부의 녹지, 근린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물 설립 및 완공계획 등은 자치단체 밀정에 의하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표기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시 경계(분할)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시계획인가 과정 또는 택지준공 후 확정측량 등으로 인해 대지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일부 주동의 지붕층 및 옥탑층, 문주, 상가 지붕층에 조경공간(식재),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설비, 실외기,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문주, 자전거 보관소, 생활폐기물 보관함,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A(채광, 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 개발, 진입로, 조망권, 일조권, 고속도로 소음, 저류지, 공공시설,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냄새 유발시설,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진동 등)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주차 공간을 이용함에 모든 이용자가 상호 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 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단지 내 전기실, 발전기실, MDF실·방재실, 지하주차장, 각종 통신/설비/전기/소방 배관 및 시설 등 공동주택(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이 공유되는 공간, 장비 및 시설이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시공사, 금융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공개 후 타 공동주택의 마감 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적용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주변지역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하기 바랍니다.
- 동일 주택형이라도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견본주택 내 평면도와 시방서, 마감자재 내역서(당사 홈페이지 확인가능)를 비치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당청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당청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청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건축 구조물 외부에 BI 및 경관 조명이 설치되며, 계약 전 이점 양지하시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하여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 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하여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①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②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③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견본주택, 홈페이지, 팸플릿,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단종),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전시공[샘플(목업)세대 84A타입(103동201호), 84B타입(103동202호), 84C타입(102동201호), 101타입(103동203호)]될 수 있으며, 사용 후 도배 등 마감 부분에 한하여 재시공될 예정으로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여건

구분	내용
택지지구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36호)로 승인된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13차 승인’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승인조건이행, 지자체 의견, 민원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는 사업진행중으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도로폭, 도로차선, 도로레벨, 완충녹지, 연결녹지, 경관녹지, 횡단보도, 신호등, 무단횡단 방지웬스 등의 계획이 변경 또는 신설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단지 경계부분의 높이차 변경, 옹벽, 조경석 쌓기 등의 설치 높이 및 적용 구간 변경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내에는 일반분양(10BL, 12BL) 제외하고 행복주택, 국민임대, 공공분양, 장기전세 등 혼합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고덕강일지구 외부 인접지역에 자원순환센터(폐기물처리시설), 열공급시설, 지하철 5호선,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중,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 중, 올림픽대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남 비행장 등이 위치, 계획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입지여건(향후 변경사항 포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동 시설물로 인한 소음, 진동, 악취, 대기질 등 환경영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북측에는 서울강동소방서강일119안전센터(서울시 강동구 고덕로98길 22)가 위치하여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이의 및 민원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초등학교(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산77-56 일원)와 중학교(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554-9 일원)의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기관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설학교의 개교시기, 설립계획, 학급 수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단지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와는 무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외의 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와 인접하여 가로등, 공원 등,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으로 시설물의 위치 및 규격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또한, 전력, 수도시설, 도시가스 및 열공급관로 등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반시설 설치로 인하여 해당 필지와 인접하여 지상 노출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대지 외부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도시 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업지 주변 레벨(계획)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집단에너지공급 사업자의 사정으로 에너지공급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내부 혹은 인근에 도시가스 시설인 지역정압기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전 청약·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허가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공중의 통행을 위하여 준공 이후에도 개방하여야 하며 차단시설 설치 등 기타 공중에 통행을 방해하는 공작물 설치가 불가합니다. -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주관부서 및 협의부서 협의의 결과에 따라 단지 내 일부 토지에 대해 지역권 등이 설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소음방지대책 및 교육환경평가 결과 등에 따라 단지 외부 일부 구간에 방음벽, 생울타리, 웬스 설치·변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라 발코니 설치비용을 완화 받은 개방형 발코니는 확장이 불가하며 이에 따라 서비스면적 및 공간 구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배수관 동파, 범죄 예방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돌출 개방형 발코니 부분에 배수 및 급수 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우수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됩니다. - 본 단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 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과 향후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도면 및 착공도면, 준공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시설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배치 계획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교 학생배치 계획(후기 고등학교 배정 관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고등학교 학교군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border="1" data-bbox="266 169 2074 514"> <thead> <tr> <th data-bbox="266 169 633 216">구분</th> <th data-bbox="633 169 862 216">구분</th> <th data-bbox="862 169 2074 216">학생배치 계획</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66 216 633 404" rowspan="2">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td> <td data-bbox="633 216 862 341">초등학교</td> <td data-bbox="862 216 2074 3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7년도에는 기존 통학구역인 강술초로 배치합니다. - 2029년 3월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개교 예정이며, 이후 강현캠퍼스에 배치 가능(전체 학생 또는 과밀시 일부 학년)합니다. </td> </tr> <tr> <td data-bbox="633 341 862 404">중학교</td> <td data-bbox="862 341 2074 4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동송파 2학군 내 중학교 배치 가능합니다. </td> </tr> <tr> <td data-bbox="266 404 633 514">서울특별시 교육청 (후기 고등학교 배정 관련)</td> <td data-bbox="633 404 862 514">고등학교</td> <td data-bbox="862 404 2074 5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구역은 강동송파학교군 고등학교 배정지역에 해당합니다. - 다만, 향후 학생배치 여건 등에 따라 타 학교군으로 배정될 수 있으며, 학생 수 추이 등에 따라 교육청, 지자체, 사업주체 간 학생배치 관련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나,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어린이케어센터(공간만 제공)로 설치되고 입주(예정)자가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구분	구분	학생배치 계획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7년도에는 기존 통학구역인 강술초로 배치합니다. - 2029년 3월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개교 예정이며, 이후 강현캠퍼스에 배치 가능(전체 학생 또는 과밀시 일부 학년)합니다.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동송파 2학군 내 중학교 배치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후기 고등학교 배정 관련)	고등학교
구분	구분	학생배치 계획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7년도에는 기존 통학구역인 강술초로 배치합니다. - 2029년 3월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개교 예정이며, 이후 강현캠퍼스에 배치 가능(전체 학생 또는 과밀시 일부 학년)합니다.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동송파 2학군 내 중학교 배치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후기 고등학교 배정 관련)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구역은 강동송파학교군 고등학교 배정지역에 해당합니다. - 다만, 향후 학생배치 여건 등에 따라 타 학교군으로 배정될 수 있으며, 학생 수 추이 등에 따라 교육청, 지자체, 사업주체 간 학생배치 관련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의 주변 도로 및 단지 외부 시설, 아파트 배치, 동·호수별 위치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녹지, 도로, 횡단보도, 교통시설물 등)은 본공사 제외 구간이며, SH기반시설 조성계획과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라 본 단지 주변 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선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주변 시설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동측에는 20M 도로 및 남측에는 10M 보행자전용도로, 북측에는 6M 보행자전용도로가 있으므로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진동 및 분진,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주변 도로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 미확인 및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와 인접한 도로로 인해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의 계획변경 등은 택지조성사업 시행자,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당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관련 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동측 주출입구, 부출입구 20m도로에 횡단보도가 계획되어 있으며, 인근에 위치하는 세대의 경우 이용자에게 의한 소음, 시각적 간섭 등의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외부 가감속차로(도로 및 보도)로, 부출입구 외부 회전교차로 사용되며 사용검사 전 해당 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감속 차로 구간 내 설치된 도로, 보도, 가로등 및 가로수 등의 시설은 공공시설물로서 부지를 제외한 시설물에 대한 소유, 유지보수 및 관리주체는 해당 관청일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공동주택[강동리엔파크 13단지-22F, 강동리엔파크 11단지-22F, e편한세상고덕어반브릿지-27F], 서울강현유치원, 강일노블레스타워(5F), 나이스파크 강일 골드프라자(5F),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등 인접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등에 간섭 및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업이므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서측면 근린공원 조성 계획·추진 중인 사항을 발체·인용한 것으로서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남측 부분, 서측 부분, 북측 부분에 휩스, 110동~부출입구, 부출입구~주출입구에 생울타리가 설치될 예정으로 현장여건, 경계부 레벨 및 관련기관 협의 및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시각적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통사항

- 본 공고문에 미 기재된 내용 및 오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청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여부 등 단지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계획승인 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조경시설물 및 미술장식품, 주차장 램프인접세대)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를 미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 전 설계도서 등의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확인 가능함)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통신중계장치, 피뢰침, 환기용 벤틸레이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입구, 부출입구는 단지 동측에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입구~101동에 위치하고, 주차장 진입로는 101동 필로티 하부를 통과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해당 동 및 인접 세대는 차량 통과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빛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에는 소방시설, 급배기팬, 탈취기, 제연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냄새, 소음 및 진동, 시야 간섭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옥상바닥에 탈취기등 기계장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주거동 저층부는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저층배치구간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주동 10층으로 계획하여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인한 소음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하며, 중층배치구간은 주동 11~14층, 15층으로 계획하여 대로변의 소음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하며, 학교주변의 위화감 해소 및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배치구간의 기준에 따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전면공지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건축한계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일반인이 24시간 보행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된 통로로 통행 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일 등 당사가 지정한 날짜 외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는 경우 또는 단지 배치 특성상 사다리차 진입이 가능할 경우 사업주체는 사다리차 사용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 이사 중 보도블럭 및 경계석, 조경 등 훼손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주요 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및 통로 등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일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외부의 레벌차로 인한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설치로 일부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계획은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동에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벌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 헬륨, 생활폐기물 보관함, CT박스 등의 위치를 확인 바라며 추후 위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에는 생활폐기물 보관함 및 CT박스가 노출되어 설치될 예정이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냄새, 소음, 진동 등) 침해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 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 환기 및 채광을 위하여 채광창 및 D.A가 지상에 노출되며, 저층 세대에서 시야 간섭, 소음 및 분진 등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위치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랍니다.
-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및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는 인근 세대는 소음, 조망 및 분진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에는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냉·난방용 실외기 및 환기설비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해야 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저수조 및 저류조, 동지하에 발전기실, 전기실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설치되는 오배수벤트 및 공용 루프휀 설치로 인해 주변의 일부 세대에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한전개폐기 또는 변압기 설치위치는 해당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탑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으로 발생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동의 없이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 진행 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인근 학교용지 등으로 인해 조망, 소음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디자인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인·허가 도서, 분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성능검사제도(사후확인제)의 기준에 맞는 제품으로 사용 될 예정이며,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의 공기청정시스템 및 전열교환기 필터와 부대복리시설 등에 설치되는 전열교환기 필터의 교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저층 세대(특히 101동, 102동 저층세대)는 해당 시설의 용도에 따라 주방 배기팬 및 실외기 등이 다수 설치되어 냄새, 소음, 진동 및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특히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붕과 주변을 세대 전용 및 공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113호) 인근 정면 우측에는 전기 관련(개폐기 등)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으로 반드시 위치 등을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운영방식 및 관리비 부과 등은 입주자가 결정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단지 남측 부분, 서측 부분, 북측 부분에 쉼스, 110동~부출입구, 부출입구~주출입구에 생활타리의 높이 및 디자인은 모형, CG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 보관서, 생활폐기물 보관함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사업주체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옥탑 및 옥상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발전모듈,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조형물 상부에 도장 미시공)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 인접세대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되거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옥외 계단 및 엘리베이터, 계단실, 외부 통로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조망권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위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북측 초등학교부지의 경우 단지 내 쉼스 설치될 수 있으며,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로의 직접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상층 필로티(101동, 103동~109동, 111동~113동)는 보행통로로 1개층 설치 및 101동 필로티는 근린생활시설 주차 출입구로 2개층 설치되는 구조이며, 주동 위치에 따라 진입방식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견본주택 현장에서 모형도, 도면 등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 천장고는 2.3M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시설계 시 구조경도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되어 각 동 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는 구조상 외기에 직접 면하는 구조로 옆, 상부 세대는 필로티와 면한 부위의 난방 효율이 저하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기에, 저층 세대의 경우 모형 및 도면을 확인하여 해당 사항의 간섭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 옆, 상부 세대는 시설물의 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문주는 동측 주출입구에 설치되며 문주 설치로 인한 일조권, 시야간섭 및 빗공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인·허가, 실시설계, 특화설계에 따라 크기,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2층에는 기계실, 저수조, 저류조,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소음, 악취,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인·허가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일 이후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통보기로 한다.(단,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기간마다 그 변경내용을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 단지 내 토목 옹벽 및 건축 옹벽 디자인과 마감재, 녹화계획 등은, 실제 시공시 기능 및 성능개선, 주변 실제 현황,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 없이 향후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선큰 및 층간 바닥 오프닝, 출입부 캐노피의 위치와 크기, 디자인은 상세설계에 따라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외부입면, 부대시설 디자인은 특화설계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동별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에 인접 설치되는 각종 단지 내 공용시설물이 근접 설치되므로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일부 주동 옥상 파라펫, 옥탑구조물 및 측벽에는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 주동 옥상에는 일부 조경이 설치되며 식재, 수종, 수량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공용 태양광패널이 101동~113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실시공시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눈부심, 빛반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단지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옥상층, 지상층,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 (중계장치,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고, 104동, 106동, 111동 지하에는 중계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시공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 전 견본주택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105동, 106동, 113동 인근에는 통학차량 정차를 위한 맘스존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주변 세대는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113동의 중앙 및 111동,112동의 중앙에는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하여 단지 내 도로(지하주차장 및 램프 포함)인접 세대는 자동차로 인한 소음 및 전조등의 불빛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1동, 113동 사이에는 문주가 위치하고 있어, 인접세대에 채광 및 시야간섭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실시설계, 특화설계에 따라 크기,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102동, 106동, 109동), 유아놀이터(102동), 주민운동시설(103동, 113동) 인근에 위치해 있어,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주변 세대는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선큰(105동~106동, 107동~108동)이 위치하고 있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원(101동~102동, 110동~111동, 112~113동), 잔디마당(103동~104동, 108동~109동)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주변 세대는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변정원(104동~105동)이 위치하고 있어 인접세대에 오염수, 미생물 발생, 해충 등의 소음 등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1동~112동 동측 부지경계부터 107동~108동 서측 부지경계를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인이 보행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통로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 세대에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픈스페이스광장은 공공보행통로와 선큰사이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트니스센터(107동~108동), 커뮤니티센터(105동~106동) 지하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동측면에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는 각 경비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객에 의해 주변 세대는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102동 동측면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주변 세대는 소음, 먼지 및 실외기로 인한 열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의 조망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상 1층에는 101동(MDF실·방재실), 102동(어린이집), 110동(경로당), 112동(관리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시설 이용에 따라 주변 세대는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3동 지하2층에는 기계실, 저수조 및 저류조, 103동 지하2층에는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며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일부세대는 저층배치구간 10층의 저층 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지하층 출입구 인근에 무인 택배보관함이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장소 및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채광 및 환기구 위치하고 있으며 도면 및 모형을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하 1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개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동 지하층에는 제연휠크롬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조망과 일조량 등이 제한되고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를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층 필로티 및 외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D.A(설비 환기구), 채광창, 생활폐기물 보관함, 실외기,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고급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 주동 1층 로비출입문은 마감에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될 수 있으며, 구조체 형태 및 마감 여건에 따라 각 동 지하 출입문의 크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내에는 제연 휠크롬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뿔칠, 페인트로 마감되며, 주동형태에 따라 석재와 뿔칠, 페인트의 적용비율은 각동별로 상이할 수 있고,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및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석재는 입면디자인에 따라 석종, 마감면 등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치장 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는 주민의 통행과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 난간대, 공용부위 난간대 및 발코니 난간대의 디테일, 프레임 두께, 색상, 사이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외관, 조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의 BI, CI는 지구단위 지침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시공 여건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민원에 의하여 브랜드명, 단지명, 팻네임 등을 변경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건물외관(옥탑, 주동출입구), 아파트의 외부색채/패턴, 줄눈 패턴, 주현관, 필로티(내외부) 등은 분양 이후 세부 디자인 완료 시 확정되며,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주동 주출입구 게이트 디자인은 위치에 따라 석재 돌출 치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게이트의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 출입구 디자인 벽체 및 데크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브랜드의 명칭, 로고의 디자인, 규격,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하여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옥상 및 옥탑층에는 의장용 구조물, 통신시설, 위성안테나, 경관조명, 피리칭 등의 시설물이 다수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일부 고주파 소음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주동 저층 외벽부 마감은 1개층~3개층(동마다 상이함)은 석재 및 일부 수성페인트 혼합, 2개층~3개층(동마다 상이함)은 수성페인트 마감이 기본 마감으로 시공됩니다.(특화설계에 따라 층수 영역 및 구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석공사에 쓰이는 자재가 천연석재일 경우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VEIN)는 천연석 특성 또는 제품 간 차이로 인하여 색상 및 무늬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일부 옥상/옥탑부/측벽에 설치되는 경관조명의 상세 계획은 미정으로, 실시공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자료(모형, CG등)에 표현된 옥탑 디자인 구조물의 규격, 기둥의 위치/크기, 간살 등의 규격 등은 이해를 돕기위한 대략적인 표현으로 실시설계 및 구조계산에 따라 세부규격이 결정되므로, 분양 홍보자료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설치되는 경관조명, 보안등, 수목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조명 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비용 일체(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가로등, 보안등, 수목등 및 기타 조명에 의하여 야간에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쌓기,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공용부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의 필로티 공간은 주동출입, 보행통로 또는 공용부분으로 개인이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와 현관문 사이 일부에 설치되는 홀, 복도 등의 공간 및 세대간 PIT 공간은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동별, 타입별로 구조 및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공용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물의 유지, 보수, 관리 비용 일체(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이 수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단지 불투명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세대의 조망권이 저하되며, 현장여건, 경계부 레벨 및 관련기관 협의 및 실시설계에 따라 크기 및 위치,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시공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단지 내 부력방지 공법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 비용은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공공장소인 단지 내 보도,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 급배기구, D.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TOP LIGHT(천창, 채광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채광창) 자연거보관소, 생활폐기물 보관함, 근린생활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분진,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모형도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어린이케어센터 등),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 공동시설에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분진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 조경, 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외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엘리베이터의 구조물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및 경비실, D.A, 구조물, 저층부마감, 동별 출입구 디자인 및 장식을, 단지 내부 보행로 및 차로 바닥포장재 및 난간대 등 모든 외부 환경 시설물은 세부적인 디자인 작업 진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위치 및 크기, 색상, 재질, 형태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외보안등 등 각종 조명 및 기타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출입구, 운주 등 단지내 시설물 등의 특화로 인해 일부세대에는 조망 및 채광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조경 및 도로, 시설물 등은 모형과 다를 수 있으며 CG, 각종 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시설 및 지하 PIT 등은 입주개시일 이후 일정 기간 AS사무실 및 AS자재 창고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p>공용설비 및 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동 지하 피트 내부에는 배수처리를 위한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며 펌프 가동 시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주동 세대별 동체감지시스템은 최하층 1개층(필로티의 경우 필로티 상부 세대)은 외부 창호 전체, 기준층은 거실에만 설치됩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하부 피트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이 1개동 당 1개소씩 지하층 주동출입구 인근에 설치되며, 세부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동 출입구의 자동문의 경우 프레임이 있는 자동문 슬라이딩&스윙도어 및 픽스도어는 안전유리가 적용됩니다. - 지붕층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 위치, 설치 각도 및 설치 면적, 장비의 구성 등 세부사항은 태양광설비의 최대 전력생산 등을 고려하여 설치될 예정으로 실시공시 도면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옥상의 지붕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세대의 위치에 따라 눈부심, 빛반사 등의 발생과 함께 일조, 조망 또는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및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등의 옥상에는 녹화 설치될 예정이며 실시공시 도면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해당 녹화는 공용공간으로 인근 세대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고, 옥상의 인근 세대는 냄새 및 곤충 발생 등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부위 관리용 철재사다리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층 및 옥탑등에 설치되는 경관조명 및 옥상구조물은 실시공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경관조명 작동 및 운영, 유지보수 등 관련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이며, 이를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및 실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축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몰딩(모양, 재질, 위치) 등)은 현장 시공 시 모형, CG, 각종 홍보물과 달리 변경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단위세대 및 마감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및 서비스면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아파트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기본형(비확장형), 확장형의 창호 사양은 발코니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인접상부세대가 확장형인 경우 발코니의 천장에 상부세대의 단열재가 설치되어, 기존층보다 천장고가 낮아지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인접측면 세대가 확장형인 경우 인접세대에 면한 발코니 벽부에 측면세대의 단열재가 설치되어, 확장 선택시보다 발코니 실사용면적이 작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창호 하부에 골조턱 설치로 인하여 발코니 출입이 불가한 창호가 설치되는 실이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는 층별, 위치별로 같은 평형대이나 실사용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라 발코니 설치비용을 완화 받은 개방형 발코니는 확장이 불가하며 이에 따라 서비스면적 및 공간 구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배수관 동파, 범죄 예방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돌출 개방형 발코니 부분에 배수 및 급수 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우수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됩니다. - 돌출 개방형 발코니 위치는 인·허가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타입 및 세대 위치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사전에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돌출 개방형 발코니는 외부 사시 설치가 불가하므로 사전에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 주택형은 전실이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신발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본 공사 시 천장들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의 층고는 1층 2.91M, 2층 이상은 2.83M이며, 천장고는 1층 2.3M(우물천장 2.4M), 2층 이상은 천장고 2.3M(우물천장 2.4M)로 동일합니다. - 1층 및 기준층의 욕실 천장고는 동일합니다.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실 시공 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적 허용한도 내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석재류, 타일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사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타입에 따라 적용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 위치 및 사이즈, 커버재질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옵션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건립세대의 경우, 평면에 따라 조명기구 수량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p>안목/치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인테리어 도면의 안목치수는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다소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p>석재/타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사 시 대형세라믹타일 및 타일(주방상판 및 주방벽체, 거실아트월 유상옵션)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줄눈위치 및 각 액세서리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벽, 욕실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p>창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의 창호의 형태 및 재질, 색상, 크기, 창호분할의 위치 및 개폐방향, 위치, 유리사양, 창호 분할수 등은 현장 여건 및 미관, 내풍압,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도어 열림방향은 수납선반설치 위치 및 이용자 동선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도면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안방 분합문 커튼박스 높이는 스프링클러 배관설치에 따라 높이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세대의 위아래 인접세대의 확장여부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로 인하여 커튼박스의 깊이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이는 공동주택 성능을 위한 것으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세대 외부창호 및 계단실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결과에 따라 층별, 세대별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1층 및 기준층 세대의 창호 크기는 동일합니다.
<p>전기/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부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및 전기 마감재 위치는 본 공사 시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는 타일의 줄눈 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각 타입 침실 벽체 1개소에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이 노출 설치될 수 있어 시각적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타입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이 설치되는 벽체가 경량벽체인 경우 설비설치를 위하여 벽체 두께가 조정될 수 있고, 골조벽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냉매배관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용 냉매배관 및 드레인이 설치됩니다. - 실외기 가동 시 실내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각 세대 실외기실의 루버에 수동 개폐 및 전동 개폐장치(실외기실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자동으로 개폐) 설치될 예정입니다. - 실외기실의 루버 부근에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별도의 배수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상부장은 천장에서 이격되어 설치되며, 후드장 주변 천장으로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운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등 원격제어가 가능하나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어플 및 세대인증이 필요 하고 휴대폰 제어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 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 내부 바닥 난방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 팬트리실 바닥 난방은 운수분배기에서 개별 제어가 되지 않고 인접 실의 바닥 난방과 연계되어 작동 가능합니다.

<p>욕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거실 및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없으며,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정의 천정재 및 벽, 바닥의 타일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그 위치는 점검 편의 등을 위해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샤워부스 및 욕조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고 변기 및 세면기 인근 바닥 일부에만 설치되며, 욕실 바닥 난방은 온수분배기에서 개별 제어가 되지 않고 인접 실의 바닥 난방과 연계되어 작동 가능합니다.
<p>유상옵션 선택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상옵션품목 및 선택옵션품목에 대한 선택은 확장형 선택시에만 선택 가능하며, 계약전 유상옵션품목(가구, 가전 등)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각 평형별 유,무상옵션 항목 및 확장공사 포함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사,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4구 인덕션, 현관 중문, 주방가구 및 기타 인테리어 유상옵션 등은 별도 유상옵션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 항목등은 계약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중문 미선택시 중문틀은 시공되지 않으며,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서 계약시 형태, 제품사양 등에 교체 및 변경을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 차단 목적에 한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제품 , 도기 및 수전금구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서 계약시 형태, 제품사양 등에 교체 및 변경을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옵션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 건본주택은 2025년 8월 중 폐쇄 및 철거하므로 추후 건본주택에서 관람 및 옵션 계약 진행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의 유상옵션의 계약 추가·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다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전기인덕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주방 가스배관은 시공되며, 가스배관이 주방상부장 후면을 지나서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은 세대 내 공기 청정화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에서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은 천장에 빌트인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 설치 위치는 건본주택에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별 명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 구성품은 천장형 공기청정기와 리모컨이며 천장형 공기청정기 1대당 제어용 리모컨 1대를 제공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가구 및 마감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세대 가구류는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가구는 추후 입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주요 입찰 참여업체는 내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불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가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내부에 설치되는 주방가구(상,하부장), 신발장, 화장대, 불박이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상하부, 측후면 등 비노출면에는 마루, 타일, 도배지 등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곳의 시공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가구 혹은 거울 뒷면 등 보이지 않는 곳은 실제 시공 시 재생 타일을 이용하여 마감하거나 혹은 마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개별 냉장고 크기에 따라 주방쪽으로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건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내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이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바닥 마감재의 배열 방향과 나누기 배치 및 위치 등은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근린생활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대수는 지상 6대이며, 추가로 주차구획 등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상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 출입에 따른 불빛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구간은 101동 및 102동 후측면에 배치될 예정이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옥상 및 외벽에 설치되는 다수의 환기구, 주방 배기팬, 간판, 조명 등에 따른 저층부 및 인근 세대의 소음, 분진, 냄새, 시각적 간섭 등으로 인한 불편항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 및 변경, 시공 등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도로와의 레벨차로 인해 근린생활시설 진입로 및 출입구가 모형 및 CG와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하여 소음 및 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공동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동측 주출입구, 부출입구 인근에 문주 및 경비실, 맘스존, 미술장식품, 지하주차장이 계획되어,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는 일조권, 시야간섭 및 빛공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동일 면적 내에서 해당 용도의 구성 및 실 구획, 실면적 등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시설에 입주민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및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입주자에게 인계할 예정입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상1층(어린이집, 관리사무소, 경로당, MDF실·방재실) 및 지하1층에는 부대복리시설[피트니스센터(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퍼팅룸, 코인세탁실(공간만제공)), 커뮤니티센터(독서실, 작은도서관, 어린이케어센터, 스티디룸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케어센터 등에 내부시설물,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피트니스(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業])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경로당 운영주체는 준공 사용검사 후 강동구청에 경로당 등록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주차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860대, 근린생활시설 지상 6대 총 866대(일반형, 확장형, 경형, 장애인, 가족배려, 전기충전 등 포함)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구획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에 전기충전 44대, 이동형충전설비콘센트 16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장의 위치, 구조에 따라 배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 주차장 출입구 유효높이 2.8m, 차로 높이 2.8m로 설계되었으며, 입주자가 개인적으로 개조한 차량의 높이가 주차구획 최소 높이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파손 등의 책임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주출입구, 부출입구 주차장 진출입로는 단지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 통합형입니다. -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차수판 2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천공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 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시 지하주차장 기둥 또는 벽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이용 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아 일부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설치되는 전기실/발전기실, 기계실/저수조의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진동, 매연 등이 일부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등 설비공간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지상에 노출된 환기 시설물은 건축물의 특성상 필요한 시설로서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형태와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 세대는 출입구를 이용하는 차량에 의해 빛공해, 소음, 진동 등의 생활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램프 구조물로 인한 시야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는 조경계획으로 인한 일조량, 조망권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수량 및 종류 형태 등은 조경 특화설계 및 환경개선 목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경계에는 레벨차이에 의해 보강토옹벽, 골조 옹벽 또는 조경석 등이 설치되며,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녹지, 조경시설 등)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본 시공 시 홍보물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구분	내용
건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은 84A, 101 타입만 설치되며 건본주택에 미설치된 84B, 84C 타입에 대해서는 분양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내 미건립세대의 경우 건본주택 내 비치된 도서를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비확장형 세대 선택시 제외 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 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시공시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추가선택품목, 건본주택 연출용 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건본주택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강도, 사진 등은 당사에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및 발주에 의한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현관 방화문, 가구, 창호(향후 품양테스트에 따라 조정)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2025년 8월 중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건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이고 내부 촬영 동영상의 복사, 반출, 캡처 등을 통한 외부 유출은 절대 불가하며 촬영 방식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시공시 설계도서 및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건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건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시 시공에서 제외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에 설치된 음향설비,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시공 시 미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 겸용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냉방전용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설치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p>사이버 견본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VR동영상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견본주택을 사전에 촬영하여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 홍보 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 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p>홍보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달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및 집기류를 표현하여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등)과 공급 안내문,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홍보영상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주민공동시설 평면도, 입체도와 평면도 등),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 투시도(색상, 구획선), 면적 및 도면 내용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홍보물 및 모형에 표현된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 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달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 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오기·오타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 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카달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거합니다.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 77-22번지

■ 분양문의 : ☎ 02-427-8000

■ 홈페이지 주소 : <https://gd-verthill.co.kr>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고덕강일 대성베르힐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